

공간정보기술경력증

신고업무 수탁기관

유의사항

- 공간정보기술경력증은 항상 휴대하여야 하며, 관계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시하여야 합니다.
- 공간정보기술경력증의 갱신사유(작성란의 부족 등) 또는 재발급사유(훼손·분실 등)가 발생한 경우에는 「공간정보기술 진흥법」 제22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에 따라 조속히 갱신 받거나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.
- 공간정보기술경력증은 양도·양수 또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.
- 공간정보관련 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은 그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공간정보기술경력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공간정보기술경력증

증명사진

(3.5cm×4.5cm)

발급번호

○○○○

성명

○○○

발급일

○○○○

생년월일

○○○○

「공간정보산업 진흥법」 제23조의3제4항에 따라
공간정보기술경력증을 발급합니다.

신고업무 수탁기관의 장

직인

■ 기술등급

발급번호:

성명 :

날짜	분야	기술등급	확인

날짜	분야	기술등급	확인

